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약관

제 정 : 2023. 12. 21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약관의 내용) 이 약관은 피보험자가 수출한 물품(용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이하 “대금회수불능”) 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와 보험계약자간 체결하는 단기수출보험 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보험약관입니다.

제 2 조 (적용대상거래) 이 약관은 수출대금 또는 임대료(이하 “수출대금” 이라 함)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다만, 중견기업의 경우 180일) 이내인 수출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수출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신용장조건으로 명시된 서류가 해당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신용장개설은행의 대금지급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2.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수출계약 등에 따라 수출계약 상대방의 대금지급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한다는 내용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 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청약시 제출한 보험계약 대상 수출기업입니다.

② 이 약관에서 “수출” 이라 함은 물품의 선적을 말합니다. 다만, 선적전에 물품을 수출계약상대방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를 말합니다.

③ 이 약관의 “수출거래”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1.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2.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3.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

④ 이 약관에서 “본지사” 라 함은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 수출대행의뢰자 포함)와 수출계약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국내본사(지사)와 해외지사(본사) 또는 현지법인(피보험자의 계열기업의 해외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포함함)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동일한 본사의 지사(현지법인을 포함함) 사이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최대주주(최대 지분 소유자를 포함함)로서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금의 점유비율(임직원,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계열기업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비율을 포함함)이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 총액에 대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4. 대표권을 가진 자, 이사직에 있는 자 또는 그 밖의 경영의 기본적 방침 결정에 참가하는 자를 파견하고 있는 경우
5. 혈연관계(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함)에 있는 경우(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지배주주가 혈연관계인 경우를 포함함)

⑤ 이 약관에서 “책임금액”이라 함은 보험계약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수출계약상대방과의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공사가 피보험자별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최대누적액을 말합니다.

⑥ 이 약관에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이라 함은 직접 회수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정당한 증빙에 따라 공사가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합니다.

1.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여비(보통운임 및 통상의 체재비). 다만, 다른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반액
2.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또는 추심위임 수수료. 다만, 다른 채권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비례 배분액
3. 수출물품의 전매처분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4. 그 밖의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

⑦ 이 약관에서 “지급불능 “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파산, 해산, 화의절차 또는 정리절차 개시 및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 소송 등 법적수단에 따르더라도 해당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될 수 없을 것이 확인된 경우

## 제 2 장 보상하는 손실

제 4 조 (담보하는 위험) 공사는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금회수불능이 발생되어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비상위험

- 가. 외국(수입국 또는 지급국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 나. 외국에서의 전쟁·혁명·내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환거래의 불능
  - 다. 수입국에서 실시되는 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
  - 라. 수입국에서의 전쟁·혁명·내란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그 수입국의 수입 불능
  - 마. 대한민국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수입국으로의 수송 불능
  - 바. 정부간 합의에 따른 채무상환 연기협정 또는 지급국에 원인이 있는 외화송금 지연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 외에 대한민국 밖에서 발생하 사유로서 수출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체결 당시 취득을 필요로 하는 수입허가 또는 외환할당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및 보험계약 체결 당시 취득하였던 수입허가의 효력에 부수된 조건 또는 기한에 의해 수입허가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함)

### 2. 신용위험

- 가. 수출계약상대방에 의한 수출물품(선적서류 포함)의 인수거절 또는 인수불능
- 나. 수출계약상대방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
- 다. 수출계약상대방의 지급지체

제 5 조 (손실액 및 보험금) ① 대금회수불능에 따른 손실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합니다.

$$\begin{aligned} \text{손실액} &= \text{수출계약상대방으로부터 결제기한까지 결제받을 수 없게 된 금액} \\ &\quad - \text{보험금을 지급받기 전 회수한 금액(연체이자 및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제외)} \\ &\quad - \text{피보험자가 수출계약상대방에 대하여 할인, 상계, 채무면제, 사고발생후의 물품인도,} \\ &\quad \text{그 밖의 방법에 따라 감소시킨 수출채권(수출물품에 대한 권리를 포함)의 금액(다만,} \\ &\quad \text{공사가 손실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불가피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end{aligned}$$

② 공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과 해당 위험에 대한 책임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text{제1항에 따른 손실액} - \text{제6조에 따른 면책대상손실}) \times \text{보상비율}^{\text{주)}} - \text{제7조제2항의 다른 보험계약 및 금융계약 등에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것이 확실한 금액}$$

주) 보험증권에 명시된 비율

③ 공사는 제2항의 보험금을 원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 3 장 보상하지 않는 손실

제 6 조 (면책) ① 다음 각 호의 손실에 대해서는 공사는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본지사 거래에서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2. 물품의 멸실, 훼손 또는 그 밖의 물품에 대해 발생한 손실
3. 피보험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 발생한 손실
4. 수출거래가 제2조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보험증권에 기재된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로의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출대행의뢰자 포함),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피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2. 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신용장조건으로 명시된 서류가 해당 신용장조건에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3. 피보험자가 제7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피보험자의 의무이행 및 제14조의 사고발생통지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해당거래에서 증가된 손실
4. 제14조의 사고발생통지 시 피보험자가 공사에게 서면으로 알린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제 4 장 피보험자의 의무

제 7 조 (피보험자의 의무) ①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공사가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 및 그 밖에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이 약관이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종류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공사 또는 공사 이외의 자와 체결한 다른 보험계약 및 금융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청구 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는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이 보험에 들지 않은 다른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를 가지고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타인으로부터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배상청구권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절차의 수행에 태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공사는 손실의 방지·경감이나 채권회수 등을 위해 어음·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처분 등에 관한 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요구를 피보험자에게 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의 이러한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해당물품을 수출계약상대방에 임의로 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⑥ 피보험자는 공사가 수출계약 및 그 밖의 보험관계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사·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제 5 장 보험관계

제 8 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공사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청약을 하고 공사가 이를 승낙하면 성립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책임금액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③ 공사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8 조의 2(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공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동의하거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전자적 방법(CD, DVD 등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공사는 보험계약자가 사이버영업점(무역보험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인터넷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가 제공하는 사이버상의 영업점을 말합니다.)을 통하여 청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사이버영업점에서 약관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을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드리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증권이 발급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공사가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 9 조(보험계약의 효력) ①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기간의 개시일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등록된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공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추가 피보험자 등록승인과 함께 추가보험료를 통지한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개시됩니다.

② 공사는 보험계약기간 동안 수출된 피보험자의 모든 수출거래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집니다.

③ 이 약관의 보험계약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공사 또는 보험계약자가 일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간 갱신된 것으로 하고 이후로도 동일합니다.

제 10 조 (보험계약 대상 피보험자의 통지) ①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 명단을 공사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통지해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중 새로운 피보험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월 1회에 한하여 10일까지 해당 피보험자 명단을 공사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기존 보험계약 대상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된 피보험자가 공사가 정한 보험계약 제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는 해당 피보험자를 보험계약 대상 피보험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의 청약내용 및 책임금액에 따라 공사가 결정합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개시 전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보험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익익월 말일 이내에서 별도로 보험료 납부기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지정기일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계약기간 개시일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④ 보험계약기간의 개시전 또는 지정된 보험료 납부기일에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며, 뒤늦게 보험료가 납부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보험계약의 소멸) ①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피사용인의 사기행위에 따라 맺어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임의 해지 시에는 해지하기 전 보험계약기간에 수출한 피보험자의 수출거래에 대한 공사의 보험책임이 종료됩니다.

③ 공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사에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공사가 제3항에 따라 보험관계를 해지한 때에는 보험관계를 해지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3 조 (보험료의 환급) ① 보험계약이 무효·실효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공사가 받은 보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환급하지 않음
  2. 공사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공사가 받은 보험료 전액환급
  3. 공사 및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경우 : 공사가 받은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
- ②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 제 6 장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제 14 조 (사고발생통지 및 보험금의 지급청구) ① 피보험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일 이전에 제4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제4조에서 정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결제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통지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 피보험자는 자기비용으로 손실을 계산하여 증빙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는 사고발생 통지와 보험금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의 2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15 조 (입금의 통지)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차감한 잔액에 대한 계산서를 해당 금액의 입금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지연하여 보험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금액에 보험금지급일의 다음날과 제1항의 통지시한 만료일의 다음날 중 늦은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날수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제 16 조 (보험금의 지급) ① 공사는 제14조에 따라 사고발생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위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금요청서(통장사본 포함)

2. 수입자 인수 환어음 원본(환어음 반환요청 전문)

3. 국, 영문 채권양도증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보험금의 지급청구에 따라 보상책임의 유무 또는 보험금 결정을 위하여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보험금 지급기한을 제1항에 따른 보험금지급기한에 그 요구한 날부터 피보험자가 해당 자료를 전부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더한 날로 합니다.

③ 공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제6조에 따라 면책 처분한 경우

2. 제17조에 따라 보험금을 가지급한 경우

3. 피보험자와 수출계약 상대방 사이의 분쟁의 발생으로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장기간 계류되는 등 공사가 정당한 사유로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고와 관련한 수출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처분이나 처분불능을 공사가 확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7 조 (보험금의 가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6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기한까지 보험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는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수출계약 상대방 사이에 분쟁, 법적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장기간 계류되거나 계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사고원인의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 보험사고 관련 수출물품이 처분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공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가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가지급한 후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정산합니다.

## 제 7 장 채권의 회수

제 18 조 (회수금) ① 보험금을 지급한 후 회수한 금액(연체이자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회수금을 공사와 피보험자 사이에 회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배분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금지급액을 제외한 채권만을 추심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공사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1. 공사가 회수한 경우

$$\text{피보험자에게 지급할 금액} = (\text{회수금} - \text{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text{주1}}) \times (1 - \text{보험금지급액} / \text{채권양도금액}^{\text{주2}})$$

2. 피보험자가 회수한 경우

$$\text{공사에 납부할 금액} = (\text{회수금} - \text{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text{주1}}) \times (\text{보험금지급액} / \text{채권잔액}^{\text{주3}})$$

주1)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 총회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한도로 회수비용을 인정합니다. 다만,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회수비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가 양도증서에 따라 공사 앞 채권양도한 금액을 말합니다.

3) 공사의 수출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권을 포함(면책금액 포함)하여 피보험자와 수출계약상대방 사이의 미회수채권액 전체를 말함. 다만, 클레임 합의 등으로 인하여 수출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과, 납부시한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제1항, 제2항 및 제15조제2항의 금액을 공사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사는 그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할 다른 보험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채권의 회수) ①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해당 수출과 관련된 채권의 회수에 노력하여야 하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사가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의 상대방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권리를 행사할 실익이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공사는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보험자대위) ①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로부터 해당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는 수출대금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피보험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수출계약 관계서류 등을 양도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 8 장 보 칙

제 21 조 (약관의 효력) ① 무역보험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어 이 약관조항이 법령의 규정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그 조항은 효력을 잃거나 법령의 규정대로 변경된 것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 법령에 따라 보험계약 내용으로 정해진 경우 그 사항은 새로이 이 약관의 내용으로 추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이 약관에 기재된 장, 조의 배열순서 및 표제는 참조의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약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22 조 (특약사항) 공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합의하여 특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이의신청) ① 공사가 이 약관에 따라서 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그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과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24 조 (적용환율 및 단수절사) ① 이 약관에서 적용하는 환율(당일 최초로 고시되는 매매기준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다만, 공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손실액에서 차감되는 금액 : 사유 발생일의 환율
2. 제5조제2항의 보험금 : 보험금 지급일의 환율
3. 제5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에서 차감되는 금액 : 사유 발생일의 환율
4.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의 환율
5.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회수금” : 회수한 날의 환율

6. 제1호부터 제5호에 규정된 환산일에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환율이 고시된 직전일의 환율로 환산합니다.
  7. 원화환율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통화를 매개로 환산합니다.
  8. 제1호부터 제7호에 규정된 환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가 지정한 환율로 환산합니다.
- ② 이 약관 제5조제1항 손실액, 제5조제2항 보험금, 제15조 및 제18조 회수금이 외국통화일 경우 소수둘째 미만을, 내국통화일 경우 10원미만을 버립니다.

제 25 조 (절차사항) 공사는 이 약관에 규정된 것 외에 보험계약에 관한 절차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 26 조 (준거법령) 이 약관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